

- 세무조사분야 -

대기업의 외주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소세 조사 방안

- 경상북도 포항시 -

I. 추진배경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슬로건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 뿐 만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으로 ‘세무조사’와 ‘기업친화적’이라는 개념은 상치되어 과연 한배를 탈수 있을까? 하는 아이러니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과거 지방세 세무조사의 방식을 살펴본다면 비효율적이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태가 적지 않았음을 볼때 분명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IMF환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파생된 영세 외주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균등할 주민세 몇 건을 추징하기 위해 공사원가 명세서, 도급계약서를 모두 제출받는다면 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추징하기 위해 회사 급여장부를 모두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우리는 탈루세원 발굴 성과를 높이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세무조사를 시행하자는 의도하에 몇가지 방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모아 발표에 임하고자 한다.

II. 대기업 외주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소세 조사

우리가 대기업 외주법인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소세 조사를 계획한 이유는 두가지 측면이다. 첫째, 인력용역 위주의 외주법인에 대한 탈루세원을 집중 발굴하고, 둘째, 세무조사 시간을 단축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지방세 세무조사 중 종업원할 사업소세 조사는 신축 건물 취득과포 산정을 위한 건설원가를 조사하는 이상의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 특히 조사의 방향을 잃었을 때는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고, 일일이 사업장현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발생한다.

1. 외주법인에 대한 사업소세 조사의 問題點

종업원할 사업소세 조사의 難題

가. 조사방식이 복잡하고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아 서면조사가 어렵다.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판관비 급여계정과 제조원가 급여관련 계정을 우선 확인하고 급여의 규모를 파악한 후 통상 연 급여금액이 5억이상인 경우 검토에 들어간다.

과세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조원가명세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급여대장, 노임대장, 공사실적증명서등 많은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같이 많은 서류를 확인해야 하기에 서류제출이 힘들어 서면조사가 어렵고 직접조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많다.

나. 과세대상여부 항목별 확인사항이 많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사업소별 종업원수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종업원에 지급되는 급여총액에 대해 5/1,000의 세율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확인내용	확 인 서 류	
종업원수	상시인원	급여대장, 회사조직도, 출근부
	일용인원	노임대장
비과세금액 확인	판관비,제조원가명세서상 급여,노무비계정과 급여대장비교	
사업소확정	현장별원가명세서, 노무비대장, 현장사무실 존재여부 확인	

다. 사업소 개념이 모호하다.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사업소”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인적 및 물적설비로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사업소의 범위’에 대한 개념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다.

▣ 사업소구분이 모호한 대규모 제조업법인 내의 사업소 현황 예시

(※ P제조법인내의 M외주법인의 대형공사 프로젝트 : 공기 2~3년)



[설비 데모플랜트 공사]



[파이넥스 공사]



[수변전 설비공사]

종업원할 사업소세 조사의 現實

종업원할 사업소세 조사는 사전에 과세대상여부를 인지하고 준비함이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조사의 방향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피조사자에게 수많은 장부,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 때로는 기업체 회계담당직원에게 과표산정작업을 하게 끔하는 무리한 요구도 하게 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소세 조사방법을 효율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외주법인에 대한 사업소세 조사의 효율성 제고

우리는 수년간의 세무조사 경험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대상사업장은 사업기간이 일시적이고 인원변동이 심한 건설현장이 아니라 제조업현장의 외주업체임을 파악하고 대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를 시행하고자 몇가지 원칙을 세우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기본 방침

● 신속성 확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세무조사 사전준비에 노력을 기울인다.

● 효율성 확보

신속한 조사를 하되 정확하고 충실한 조사는 세무조사의 기본이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도구를 확보하고 숙련된 기술을 연마한다.

● 신뢰성 확보

기업체에 대한 기본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연구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 조사자에 대한 믿음을 확보한다.

추진 내용

첫째. 사업소세 대상 법인 파악 및 조사계획 수립

대규모 제조업 법인의 외주업체 현황 파악, 외주업체의 종업원 수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연금자료 분석, 외주업체의 도급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자료분석 등을 통해 연간 대기업(발주법인)별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사업소세 조사 프로그램 활용 조사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

신속한 세무조사를 위해서 사업소세 조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의 신속성을 도모한다. 우리시의 사업소세 조사프로그램은 조사자료 데이터 입력이 편리하고, 확인되는 과표차액은 과표누락의 원인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피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사업소세 과세의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과세원칙 확보

대규모 제조업 법인의 외주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있어 ‘사업소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있어 난관에 봉착할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과세권자의 명확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 2008년 사업소세 조사 추진 일정 ■

- 외주법인 현황 파악 및 조사대상법인 선별 08. 1. 5일
(시행법인, 시공법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자료 분석)
- 연간 조사계획 수립 08. 2.20일
(연간 조사계획 수립, 시행법인별 외주법인 조사계획 반영)
- 외주법인에 대한 월별 조사 계획 수립 08. 3.10일
(년4회 4월, 7월, 8월, 10월 방문조사)
- 급여관련 계정 E-mail요청 및 조사프로그램 입력 방문조사 전일
(방문조사 전일 사업소세 조사프로그램입력)
- 방문조사 실시 및 조사마무리 방문조사 당일
(종업원 수, 사업소확정, 비과세급여 확 및 조사 마무리)

세부 추진 사항

1. 외주법인 사업소세 조사대상 파악 및 계획 수립

가. 조사대상 법인 파악

우리시 관내 대규모 제조업 법인을 사업장면적 및 규모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외주업체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국민연금 자료,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확보하여 외주업체의 종업원 고용현황과 공사도급 금액의 규모를 분석하여 연간 시행법인(대기업)별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외주법인 현황파악	종업원수 파악	도급금액 파악	자료분석 및 가공	조사계획수립
(발주업체) P 법인 H 법인 D 법인 (원도급체) D종합건설 P종합건설	국민연금 자료요청	근로복지 공단자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법인별 외주업체 종업원수, 공사금액파악 ● 주요 공사기간 확인 → 조사우선순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법인별 외주업체 조사계획수립 ● 조사방법 결정 (직접,서면 조사)

II 단계 **조사전 급여관련 계정별 원장 접수**

구분	인원	과세표준액	산출액	과세표준액	세액	과세표준액	세액	본세	가산세	계
2005년	합계	945,381,210	4,726,890	56,098,450	280,490	162,146,905	810,670	3,635,670	727,080	4,362,750
월	1월	64,293,910	321,460	-	-	25,917,365	129,580	191,880	38,370	230,250
월	2월	80,457,710	402,280	-	-	8,752,300	43,760	358,520	71,700	430,220
월	3월	72,048,980	360,240	-	-	13,970,290	69,850	290,390	58,070	348,460
월	4월	66,877,310	334,380	-	-	15,235,070	76,170	258,210	51,640	309,850
월	5월	79,481,140	397,400	56,098,450	280,490	12,643,850	63,210	53,700	10,740	64,440
2005년	합계	945,381,210	-	151,280,640	57,241,980	-	410,474,710	66,369,280	260,014,710	-
월	1월	64,293,910	-	12,229,950	-	-	30,443,960	-	21,620	-
월	2월	80,457,710	-	12,229,950	11,481,790	-	26,012,570	9,275,400	21,450	-
월	3월	72,048,980	-	12,364,500	-	-	36,229,820	-	23,430	-
월	4월	66,877,310	-	13,215,300	-	-	35,025,030	-	18,630	-

계	액
01-31 직원급여	96,733,930
02-31 직원급여	100,656,990
03-31 직원급여	99,896,610
04-31 직원급여	98,792,930
05-31 직원급여	106,240,722
06-31 직원급여	108,367,743
07-31 직원급여	104,164,643
08-31 직원급여	116,122,669
09-31 직원급여	110,739,381
10-31 직원급여	111,029,016
11-31 직원급여	112,345,073
12-31 직원급여	108,368,669
계	96,733,930
계	96,733,930
계	100,368,350
계	202,056,380
계	397,676,800
계	99,896,610
계	407,666,610
계	96,792,930
계	506,368,640
계	196,240,722
계	616,609,362
계	106,367,743

III 단계 **조사 프로그램 활용 직접 방문조사 실시**

[수행사항]

1. 급여대장상 종업원 수 확인
2. 법인의 사업소 확정 및 사업소별 과세대상 여부 확정
3. 비과세 급여확인 후 사업소세 조사프로그램에 입력
(야간근로수당, 시간외수당, 4대보험사용자부담분, 중식대 등 확인)
4. 과세대상 금액과 신고납부금액에 대한 차액을 확인 후 과세

문제점

대규모 제조업 법인 내에서의 외주법인의 사업소 확정 문제

대규모 법인내 사업소 확정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외주법인은 대규모 법인의 사업장내에서 동시에 수개의 하도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에서 일반화, 가속화 되고 있다.

예를들어 P법인내에서는 설비 개선공사, 수변전설비공사, 후판공장 증축공사, 배수체계개선공사, 전기강관 설비공사 등 독립된 프로젝트가 동시에 수행되고 수십개의 외주법인이 이 공사에 참여하였다.

이때 외주법인이 대규모 법인의 사업장내에서 여러개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제해결 방안

□ 지방세법상 ‘사업소’에 대한 정의

“사업소”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인적 및 물적설비**로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 대규모 법인의 사업장내의 외주법인의 사업소개념 확정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대규모 법인의 사업장내의 외주법인의 사업소개념을 충족시키는 물적설비는 임시사용 건축물(컨테이너 등)이다. 그러나 외주법인이 위의 예와 같이 독립된 6개의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물적설비를 각각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소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 합리적인 사업소범위 확정 방안

1)선결문제 : ‘물적설비’의 범위가 모호하다.

【자가건물(○), 임차건물(○), 타인이 제공한 사업장(?)】

☞ 사례상 아파트 경비실은 물적설비이고 백화점 입점매장은 물적설비가 아니다??

2)‘물적설비’의 개념에 대한 행자부 세칙 --> 모호함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사업에 이용되는 것.

3) '물적설비'에 대한 판단

아파트 경비실, 주차장위탁관리업체의 주차장의 사업소 인정 사례를 볼 때 대기업 법인이 생산설비 보수를 위해 외주업체에 제공한 공장도 '물적설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4) 대기업법인내의 사업소 구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인적, 물적설비 구비 여부
 - 현장사무실 또는 공장, 생산설비등 물적설비 구비여부
- 사업의 독립성 여부
 - 별도의 회계처리 : 별도 공사원가명세서, 별도 노임대장 비치여부
 - 사업소간 거리 : 종업원이 교차하여 노동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생활여부 : 업무지시, 점심식사, 편의시설 등 공동사용 여부
- 1개월 이상 사업지속 여부

3. 추진 성과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리시의 외주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소세 조사계획의 기본방침은 첫째 세무조사의 신속성 확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둘째 효율적인 조사도구로써 사업소세 조사의 복잡 산만함을 극복면서, 셋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피조사의 믿음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때 성과를 살펴본다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측면의 성과

외주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효율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에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중소기업인 경우 만나질에 세무조사를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 분	계획 추진 전	계획 추진 후	성과내용
세무조사 소요시간	1일 1개 법인 조사	1일 2개 법인 조사	세무조사 속도 2배 증가
법인 체류시간	평균 8시간	평균 4시간	법인체류시간 4시간 단축
부대효과	점심식사 접대 논란있음	점심식사 접대 논란해소	기업 경비부담 경감

세원발굴 측면의 성과

외주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효율화 계획에 따라 사업소세 조사대상법인을 선별하여 방문조사한 결과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집중 추징효과를 볼 수 있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 추징세액은 2007년 98백만원, 2008년 8월까지 43백만원으로 총 142백만원이지만 외주법인에 대한 총 추징세액이 233백만원으로 총 추징세액의 61%를 차지함으로써 사업소세 조사의 특화된 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연간 조사대상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 추징효과도 외주법인에 대한 사업소세 조사 효율화계획을 시행하기 전인 2006년 대비 2배 이상의 세원발굴의 효과를 거양하게 되었다.

특히 세무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자진신고의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음에 불때 납세환경이 열악한 외주업체의 사업소세 납세의식을 환기시켰음이 ‘외주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효율화 계획’의 보이지 않는 큰 성과로 들 수 있다.

1. 세액 추징금액(외주법인 조사 기준)

(단위:천원)

구 분	계		2007년		2008. 8월까지	
	사업소세	추징총액	사업소세	추징총액	사업소세	추징총액
계	142,004	233,495	98,292	138,201	43,712	95,294
P법인 외주업체	125,450	201,587	89,114	125,584	36,336	76,003
H법인 외주업체	1,623	6,527	1,623	4,188	0	2,339
D법인 외주업체	14,931	25,381	7,555	8,429	7,376	16,952

2. 사업소세 추징세액과 비교(전체 조사법인 기준)

(단위:천원)

구분	계획 추진 전 (2006년)	계획 추진 후 (2007년)	증가율
사업소세 추징세액	67,203	149,868	223%

Ⅲ. 맺음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명제는 비단 새정부의 슬로건이기 이전에 현대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관이 되었다.

과거 기업체를 움직인 세무조사도 이러한 가치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영세 외주업체가 느끼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세무조사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을 제한시키고 테크닉, 숙련도를 배가시키는 전문화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외주법인은 영세한 규모로써 지방세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 지방세 신고납부에 소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외주업체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지도가 이루어 져야 하겠고 이러한 이유가 우리시가 외주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세무지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수많은 하도급 외주법인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법인에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과거 대규모 제조업 법인이 부담해야 했던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이제 영세 인력용역 법인의 부담분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영세법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큰 사업소세에 대한 세율 및 지방세 체계의 변화를 검토해야할 부분이다.

성 공 요 인

앞에서 발표한 주제는 대단히 혁신적인 내용이라거나 조사효과가 대단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에 임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한번 되새겨 봄이 바람직 하다 할 것이다.

- 기업체에 대한 정보가 충실한가?
- 조사의 방향을 예측하고 있는가?
- 조사시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는가?
- 효율적인 조사도구는 없는가?

벤 치 마 킹 요 소

- 자료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
- 조사세목별 효율적인 조사도구 확보
-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과세원칙 확보